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0가합102290(본소), 2020가합1030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사용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 B

피 고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희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주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에게 48,940,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2. 10.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는 178,771,9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에게 101,639,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48,940,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D이 소외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원도급공사명: F 추가마감공사, 공사장소: 아산시 G) 중 'H'(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7.1)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I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2016. 10. 4. 이 사건 공사를

다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재재하도급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6. 7. 28. J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2) (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J에 임대(임대기간: 2016. 7. 28.부터 현장 마감시까지, 임대료 산정방법은 별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 B는 2017년 1월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마. J은 2017. 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2017. 2. 8. 피고 B의 사이에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를 원고가 피고 B에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직불동의서(을 제2호증의 2 참조)D H의 계약업체인 (주)A에 하도급계약하여 비계 설치 및 해체를 시공하고 있는 J 주식회사

의 모든 자재는 자재 임대업체인 (주)B의 소유자재임을 확인하며, 미지급된 모든 자재임대금액 및 추후 발생될 자재 임대료에 대하여 (주)A에서 (주)B에게 직불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바.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22개월간)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9. 6. 10.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가설재의 멸실로 인한 임대료 및 미해체 비용환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제목: 과지급 가설재 임대료 및 미해체 비용 환수 요청건(갑 제9호증 참조)

3. 2017년 3월 존치비계 (미해체) 수량파악을 위하여 귀사의 현장 직원들(J 소속 직원)과 실사결과 자재의 수량과 임대 수량의 차이가 임대료 기준 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됨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귀사가 만든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어 미처 차감하지 못하고, 지급까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은 귀사의 관리 하에 있던 중이니 현장 내 도난, 분실 등으로 자재의 손실 및 멸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아.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가설재는 이

사건 감정절차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2022. 2. 28. 이미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가설재의 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의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시점인 2018. 12. 31.을 기준으로 48,940,433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 청구를 중단한 2019. 12. 31.을 기준으로 17,666,542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의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멸실 자재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B는 이 사건 가설재 중 일부가 멸실(이하, 멸실된 자재'라 한다)되어 반환이 불가능함에도 22개월간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임대료 전액을 지급받은바, 원고에게 22개월간의 멸실된 자재에 대한 임대료 월 699만 원에 해당하는 1억 5,378만 원(= 699만 원 × 22개월)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납한 자재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7라인 공사현장에서 회수한 자재를 피고 B에 반납(이하, '반납한 자재'라 한다)하였음에도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2015년 5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20개월 간 반납한 자재의 임대료 월 3,938,595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78,771,900원(= 3,938,595원 × 2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I의 대표자인 L은 피고 C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I 사이에 체결된 2016. 8. 27.자 비계설치 및 해체계약의 수급인이 '피고 C'이고, 위 계약의 수급인으로서 계약기간 내에 설치된 비계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지나도 해체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240,770,000원의

해체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멸실된 자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각 증거들, 을 제3 내지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멸실된 자재의 임대료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과 J 사이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참조)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조항 제10조에는 '인도 또는 임대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인수증이나 입고증에 수량, 구격, 기타 부적합 함의 하자에 대한 요지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2근무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는 피고 B가, 임차인 지위는 원고가 각 승계하여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 B와 원고 사이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7년 2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영하게 된 이후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가설재 멸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설재가 완전한 상태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고 B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담당하였던 직원 M가 2017년 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가설재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는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에 의할 때에도, 매월 이월된 잔여 물량, 당월 공급받은 신규 물량, 당월 반환한 물량, 멸실된 물량 등을 파악하여야만 산정될 수 있고, 피고 B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거래처원장을 원고에게 보냈으며, 원고는 피고 B가 매월 원고에게 보낸 거래처원장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납한 자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각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자재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7라인 공사현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는 별개의 공사현장으로 원고로부터 공사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이 공사를 수행한 점, ② 피고 B는 N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7라인 공사현장의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N이 반납한 가설재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사현장과는 별개로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위 7라인 공사현장에 대해서 피고 B가 반납 받은 자재에 관한 임대료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7라인 공사현장에서 반납 받은 자재에 관한 임대료 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L이 I의 대표이면서 피고 C 이사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이 2016. 8. 27.자 비계설치 및 해체계약의 수급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위 2016. 7. 28.자

비계설치 및 해체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구하는 가설재 해체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 요지

피고 B는 ① 주위적으로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미지급 사용료 합계 83,972,900원과 이 사건 가설재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서 그 잔존가치액 17,666,542원(2019. 12. 31. 기준)의 합산액인 101,639,442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의 납부를 중지한 시점인 2018.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가설재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서 그 잔존가치액 48,940,433원(2018. 12. 31. 기준)의 지급을 구한다.

나. 미지급 임대료 청구 부분(주위적 반소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각 증거들,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지난 22개월분의 임대료를 이의제기 없이 지급하여 오던 중 2019년 3월분 거래명세서 확인 후에 이 사건 가설재의 멸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② 위와 같이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을 피고 B가 받은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 B가 이 사건 가설재의 멸실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의 멸실에 대한 통보를 받고서도 종전과 동일한 수준인 월 600만 원 ~ 700만 원 상당 임대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아, 피고 B가 주위적 반소청구로 구하는 미지급 임대료가 이 사건 가설재의 멸실부분을 반영하여 정확히 산정한 임대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이 사건 가설재를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미지급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가설재 잔존가치액 청구부분(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 부분)

이 사건 가설재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는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의 대상이고, ‘전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가 공통된 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함께 판단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가설재가 멸실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원고가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설재의 멸실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설재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으로서 그 잔존가치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목적물 인도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458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는 2019. 6. 10. 이 사건 가설재의 멸실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는 2019년 3월경에 피고 B가 보낸 거래명세서(갑 제3호증 참조)를 보고서야 이 사건 가설재의 멸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9. 6. 10.에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설재 멸실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설재는 2019년 3월경 또는 적어도 2019년 6월경에는 멸실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시점들에 보다 가까운 2018.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가설재의 잔존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감정결과 2018. 12. 31. 이 사건 가설재의 잔존가치액은 48,940,43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48,940,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48,940,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재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시인 2018. 12. 31.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3)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예비적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원, 판사 유가형, 판사 김성하

별지

목 록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위	기본료	1일사용료	일일료	비고
단권파이프	6#	본	550	11	11,000	
단권파이프	4#	본	400	10	8,500	
단권파이프	3#	본	300	8	7,000	
단권파이프	2#	본	250	6	5,000	
단권파이프	1.5#	본	250	5	4,500	
단권파이프	1.2#	본	250	5	3,500	
단권파이프	1#	본	250	4	2,500	
계단발판	250*914	장	500	15	10,000	
안전발판	250*1829	장	1,100	20	11,000	
안전발판	400*1829	장	1,200	22	12,000	
안전발판	500*1829	장	1,300	26	17,000	
배치발판	500*1829	장	2,000	90	40,000	
수직사다리	L:1700	EA	700	15	14,000	
올빼게름계단		EA	2,000	80	40,000	
발판틀		EA	200	3	1,500	
넙크롬프	고정 / 자동	EA	250	4	2,800	
크롬프	고정 / 자동	EA	130	1.5	1,000	
단권연결판		EA	130	1.5	900	

• 일대료 산정법 : 일대료=(기본료+1일사용료*사용일수)*사용수량

-끝-

- 1) 원고는 실제 계약체결일은 2016. 7. 13.이고, 계약서 작성일만 2016. 8. 27.이라고 주장하나, 이하에서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공사과정에서 임시적, 보전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공사완료 후 해체하여 철거하는 모든 자재를 말한다.
- 3) 이 사건 가설재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 멸실을 이유로 2019. 1. 1.부터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점, 2019. 6. 10. 이 사건 내용증명을 피고 B에 발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18. 12. 31.을 그 기준시점으로 판단하였다.